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19. 5. 14.(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19. 5. 1.
- 회부일 : 2019. 5. 3. (의안번호 : 19 - 43)

2. 개정이유

-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주민의 장례비·치료비 지원기준 등 신설(안 제4조)
-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전액을 구상하도록 신설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신설(안 부칙 제2조)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5.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는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주민의 장례비·치료비 지원기준 등 신설
-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에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전액을 구상하도록 신설
- 안 부칙 제2조에는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칙을 신설

-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7년 1월 17일 자로 시행되면서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 지방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건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주민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원인제공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